

햇빛소득마을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 예시(안)

2026. 6.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 위 햇빛소득마을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 예시(안)은 햇빛소득마을의 원활한 수행 및 분쟁예방을 위하여 제공되는 참고용 예시자료입니다.
- ※ 본 계약서 예시(안)은 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법적 적합성 또는 유효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 계약당사자는 사업의 특성 및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및 계약내용에 대한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 예시(안)

(갑지)

햇빛소득마을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 예시(안)						
공사명			설치용량	kW		
공사장소	(지번) (도로명)					
공사일정 (예정일)	발전사업허가	년 월 일	계약금액	일금 원정 (₩)		
	개발행위허가	년 월 일				
	전력수급계약신청	년 월 일	금액내역	공급가액	일금 원정 (₩)	
	공사계획신고	년 월 일			(일금 원정 (₩) (노무비)	
	사용전검사	년 월 일		부가세	일금 원정 (₩)	
	RPS 설비확인신청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자금 확보 방안	마을 자부담금 (VAT포함)	일금 원정 (₩) (%)	대금 지급 방법	선금	일금 원정 (₩) <계약체결 후 이내 지급>	
	정부정책 융자금 (VAT제외)	일금 원정 (₩) (%)			기성금	일금 원정 (₩) <공사진행 중 일마다(회)>
	기타 () (VAT포함)	일금 원정 (₩) (%)		잔금		일금 원정 (₩) <준공 후 일 이내 지급>
계약이행 보증	일금 원정 (₩), 계약금액의 %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					
하자보수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	하자보수 보증금	일금 원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년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p>위 내용을 “마을공동체” 와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이 협의하여 계약(이하 “본 계약서”)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첨부 : 1. 햇빛소득마을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계약일반조건 1부. 2. 설계서 1부.</p>						
마을공동체 (발주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인)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ReSCO) (수급인)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인)	

햇빛소득마을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조 (총칙) ① “마을공동체”와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이하 “ReSCO”)은 대등한 계약당사자로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② 본 계약은 햇빛소득마을(이하에서 정의됨) 태양광발전사업의 설비공사(이하 “본 공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관련 법령과 인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완성·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본 계약의 특약, 설계서 및 당사자 간 서면합의에 따른다.

제2조 (용어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햇빛소득마을”이라 함은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2. “계약문서”란 본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특약사항, 설계서, 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에정공정표, 제조사 보증서, 품질보증 관련 서류, 기타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일체의 문서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햇빛소득마을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본 계약 체결에 필요한 총회·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완료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발주자를 말한다.

4. “ReSCO”란 햇빛소득마을의 시공, 운영, 전력거래 지원 등 마을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이하 “센터”)의 모집 공고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5. “공급인증서(REC)”란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 태양광발전소 건설 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받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말한다.

6. “설계서”란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산출내역서로서, “마을공동체”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7. “(신)재생에너지법”은 대한민국 법률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말하며, 그 대체 또는 개정된 법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시행될 경우, 동법 및 이후 개정되는 내용을 포함한다)로서 관련 고시 등을 포함한다.

8. “전기공사업법”은 대한민국 법률인 「전기공사업법」을 말하며, 그 대체 또는 개정된 법률로 관련 고시 등을 포함한다.

9. “제반 업무”는 햇빛소득마을 태양광발전사업시설 완공 및 사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

전력수급계약체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상업운전개시신고, 사업개시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부지사용 관련 인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평가 및 조사 등)일체의 취득에 관한 지원업무를 말한다.

10. “준공”이라 함은 “ReSCO”가 본 공사를 완성하고,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운전 및 전력 판매가 가능토록 제반 업무가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수령한 시점 또는 공사를 완료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제3조 (신의성실 의무) ① “ReSCO”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태양광발전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ReSCO”는 태양광발전사업시설의 완공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체가 해당 절차를 신청·이행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서, 기술자료, 보완 자료 및 시공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ReSCO”는 태양광발전사업시설의 완공 및 사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ReSCO”는 관련 법규 및 일반산업기준에 따라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 “마을공동체”는 본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제반 업무 추진에 필요한 “ReSCO”의 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 “ReSCO”는 성실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마을공동체”에 제출하고 동 공사계획에 따라 자재, 장비, 인원을 조달 및 관리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마을공동체”가 취득하여야 할 각종 인허가에 따른 필요서류를 제공하는 등 “마을공동체”가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감독원) ① “마을공동체”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 (이하 “공사감독원”)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자재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마을공동체”가 위임하는 일

② “마을공동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ReSCO”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ReSCO”는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공동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은 본 계약의 계약금액, 공사기간, 설계내용 또는 ReSCO의 책임범위를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액, 공사기간 또는 설계내용의 변경은 “마을공동체”와 “ReSCO”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시공관리책임자) ① “ReSCO”는 착공 전에 시공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마을공동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ReSCO”를 대리한다.

제6조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내역서) ① “ReSCO”는 계약 체결후 ()일 이내에 설계서, 시방서, 산출내역서 및 본 계약을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내역서를 “마을공동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예정공정표에는 착공, 주요 기자재 발주 및 반입, 시공, 사용전검사, 준공검사, 전력수급계약 및 공급인증서 관련 지원 일정 등 주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계약이행보증) ① “ReSCO”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일까지 전체 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마을공동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ReSCO가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을공동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ReSCO”는 증액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마을공동체”는 감액분에 해당하는 보증을 반환하거나 감액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한다.

④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증권 기타 증서

제8조 (이행보증금의 처리) ① “ReSCO”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마을공동체”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귀속시키거나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마을공동체”는 그 초과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ReSCO”가 이 계약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 또는 “ReSCO”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마을공동체”는 기 납부 또는 제출된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지체 없이 “ReSCO”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선금) ① “마을공동체”가 선금을 지급한 경우 “ReSCO”는 이를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제반 업무 수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부분의 대가}}{\text{계약금액}}$$

- ③ “ReSCO”는 선금을 지급받기 전 선금액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선금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서를 “마을공동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증보험증권 및 보증서의 발행기관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 ④ 보증기간은 선금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에 60일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ReSCO”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ReSCO”는 미정산 선금 잔액을 지체 없이 “마을공동체”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을공동체”는 선금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마을공동체”는 필요시 제5항에 따른 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제23조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ReSCO”는 이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동의하며, 질권 설정을 위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 (자재의 검사 등)**
- ①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중에서 “마을공동체”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ReSCO”는 사용전에 “마을공동체”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마을공동체”와 협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반출하여야 한다.
 - ② “ReSCO”는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마을공동체”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 ④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마을공동체”의 참여 또는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없다.
 - ⑤ “ReSCO”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반출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을공동체”는 “ReSCO”의 비용으로 일방적으로 불합격자재를 현장 외부로 반출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ReSCO”는 현장에 반입된 불합격자재를 현장외부로 반출할 때에도 “마을공동체”에 보고 후 반출하여야 한다.
 - ⑥ “ReSCO”는 설계서와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제조사, 모델명, 정격용량, 효율, 인증기준, 보증기간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마을공동체”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ReSCO”는 태양광 모듈, 인버터, 구조물, 접속함, 수배전반 등 주요 기자재에 대하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인증서, 제조사 보증서 등 품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⑧ “ReSCO”가 승인받지 않은 자재 또는 설계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한 경우 “마을공동체”는 “ReSCO”의 비용으로 교체,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 (지급자재와 대여품)**
- ① “마을공동체”가 자재 및 대여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은 공사에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 장소는 지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 ② “ReSCO”는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마을공동체”에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자재지급의 지연으로 본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ReSCO”는 “마을공동체”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공동체”는 현품 또는 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ReSCO”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ReSCO”는 “마을공동체”가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ReSCO”는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 없이 “마을공동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권 사용) “ReSCO”는 특허권 등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안전관리비 계상 등) ① “ReSCO”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위험성 평가,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ReSCO”에 있다. 다만, “마을공동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마을공동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 법정경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산출내역서에 계상하도록 한다.

④ 제3항의 법정경비는 관계 법령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정산한다.

⑤ 공사장소의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ReSCO”의 책임은 관계 법령상 “마을공동체”가 발주자 또는 도급인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⑥ “마을공동체”는 제3항에서 규정한 의무적 부담 비용에 대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실제로 지출된 금액여부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 (응급조치) ① “ReSCO”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마을공동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ReSCO”에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마을공동체”가 부담하되, 해당 경비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ReSCO”가 부담한다.

제15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마을공동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태 등 “ReSCO”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ReSCO”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마을공동체”에 요구할 수 있다.

- ② “ReSCO”는 제1항의 사유로 본 공사의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마을공동체”에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마을공동체”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마을공동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가 승인되었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제16조 (부적합한 공사) ① “마을공동체”는 본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ReSCO”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마을공동체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ReSCO”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ReSCO”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ReSCO”는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대여품에 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마을공동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ReSCO”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장소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③ “마을공동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ReSCO”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마을공동체”는 “ReSCO”로부터 설계변경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한 뒤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설계변경의 사유가 “ReSCO”의 귀책으로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제19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 변동 후에 반입되었거나 제공된 자재 및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을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5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비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21조 (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 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ReSCO”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마을공동체”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ReSCO”는 기성부분금 청구 시 공사기성내역서, 사진대지, 자재반입 증빙, 세금계산서, 감리조서 또는 공사감독 확인서, 선금 사용내역 및 기타 기성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마을공동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ReSCO”는 제1항의 검사 결과와 제6조의 공사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공동체”는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마을공동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금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 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갑지에 명시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이자를 “ReSCO”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준공) ① “ReSCO”는 본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마을공동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ReSCO”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ReSCO”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ReSCO”는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공동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대금지급) ① “ReSCO”는 “마을공동체”의 준공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장소를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마을공동체”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마을공동체”는 특약이 없는 한 센터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충족된 경우 본 계약 갑지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③ “마을공동체”와 “ReSCO”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천서에 따라 대출을 승인한 금융기관이 “마을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을 “ReSCO”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연하면, “마을공동체”가 금융기관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동의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실행한 경우, 해당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마을공동체”의 “ReSCO”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24조 (이행지체) ① “ReSCO”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준공 예정일 내에 본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마을공동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공동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태 기타 “ReSCO”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마을공동체”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마을공동체”는 “ReSCO”

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 (하자담보) ① “ReSCO”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증서로서 “마을공동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보증보험증권의 발행기관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1.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보증서

2.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②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센터의 ReSCO 모집공고 시 “ReSCO”가 제출한 하자이행보증기간 설정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③ “ReSCO”는 준공일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불가항력이나 “ReSCO”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ReSCO”가 “마을공동체”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을공동체”는 “ReSCO”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ReSCO”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ReSCO”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공동체”가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이행은 하자 또는 하자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하자보수책임) “ReSCO”는 “마을공동체”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보수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마을공동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품질보증) ① “ReSCO”는 “마을공동체”와 합의하여 일정기간의 품질보증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발전량(이하 “최저발전량”)을 1년 단위로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발전량은 준공 후 매 1년마다 ()% 씩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ReSCO”가 준공 직후 발전소의 최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마을공동체”에 요청하는 경우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품질보증기간의 개시를 지연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연 기간만큼 품질보증기간 또한 연장되어야 한다.

② “ReSCO”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매 1년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제 발전량이 최저발전량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마을공동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1년간 발전량이 최저발전량에 미달하는 경우 “ReSCO”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귀책사유가 “ReSCO”에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사, 수리, 교체 등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출된 손실보전비용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을공동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태 및 “마을공동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전량이 미달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④ 품질보증기간 내 제3항에 따라 “ReSCO”가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도 최저 발전량에 계속 미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추가적인 손실보전비용 및 절차에 대하여 “ReSCO”는 “마을공동체”와 별도 합의하여야 한다.

⑤ “ReSCO”가 본 항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ReSCO”는 미지급금 전액을 “마을공동체”에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갑지에 명시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⑥ “ReSCO”가 “마을공동체”에 공급하는 태양광모듈(Wp)은 ()의 정품 모듈로서 보증기간은 납품회사의 보증서를 따르되, 보증기간 내 제조사의 파산, 폐업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A/S 지연 등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ReSCO”가 주된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⑦ “ReSCO”가 “마을공동체”에 공급하는 계통연계형 인버터는 ()의 정품 인버터로서 보증기간은 납품회사의 보증서를 따르되, 보증기간 내 제조사의 파산, 폐업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A/S 지연 등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ReSCO”가 주된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제28조 (유지관리) ① “ReSCO”는 햇빛소득마을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운영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발전소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ReSCO”는 “마을공동체”와 별도의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ReSCO”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유지관리를 지역 소재 기업 또는 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ReSCO”는 제3자의 인적사항, 위탁기간, 위탁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을 미리 “마을공동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ReSCO”가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운영관리계약에서 정한 책임은 “ReSCO”가 부담한다.

④ “ReSCO”는 준공 시 유지관리 매뉴얼, 주요 기자재 목록, 제조사 보증서, 점검기준, 비상연락체계 및 운영상 주의사항을 “마을공동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 (폐기) “ReSCO”는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소의 내용연수가 도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폐기 절차에 따른다.

제30조 (“마을공동체”의 계약해제 등) ①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eSCO”에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ReSCO”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사계획신고, 사용전 검사 등 제반 업무가 불허·취소·실효되어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2. “ReSCO”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3. “ReSCO”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본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ReSCO”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거나, 마을공동체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주요 공정을 하도급하거나, 전기공사업 등록증·기술자격을 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5. “ReSCO”가 센터에서 정한 ReSCO 등록요건 또는 전기공사업 등록요건을 상실한 경우

6. 기타 “ReSCO”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마을공동체”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통지가 “ReSCO”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④ “ReSCO”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은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지체 없이 “마을공동체”에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ReSCO”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ReSCO”의 계약해제 등) ① “ReSCO”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에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의 요구로 공사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경우
2. “마을공동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90일을 초과하여 정지되거나, 계약서상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3. “마을공동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본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정부정책자금, 금융지원등의 미승인·집행불가로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원인이 “ReSCO”의 귀책사유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통지가 “마을공동체”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 (손해배상 등)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마을공동체”와 “ReSCO”는 지체 없이 기성부분, 지급자재, 선금, 보증금, 현장 보전비용 및 기타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본 공사 착공 전 계약이 해제되고 “ReSCO”가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ReSCO”는 미정산 선금 전액을 “마을공동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공동체”가 사전에 승인한 제반 업무 수행비용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합리적 소요금액에 대해 실비 정산할 수 있다.

③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0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마을공동체”가 사업 추진 의사가 있을 때에는 센터에 사업 추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ReSCO”는 본 계약이 원활히 승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 (관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을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법령의 준수) “마을공동체”와 “ReSCO”는 본 공사의 시공 및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전기공사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35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마을공동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36조 (특약사항) ①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마을공동체”와 “ReSCO”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상 계약문서 상호 간에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 계약서 갑지,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의 순서로 우선 적용한다.

손실보전비용 계산

- 품질보증기간 : 년 개월(20 . . . ~ 20 . . .)
- 연간 최저발전량 : MWh
 - 최저발전량은 설비의 용량, 해당지역의 일사량, 일조시간 등 기후조건, 설비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마을공동체”와 “ReSCO”가 합의하여 산출
 - “ReSCO”는 연간 최저발전량을 품질보증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마다 ()% 씩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손실보전 조건
 - 품질보증 기간 내 1년간 실제 발전량이 최저발전량에 미달할 경우
- 손실보전비용
 - ① 계통한계가격 관련 손실보전비용
(최저발전량 - 실제발전량) × 계통한계가격(SMP)
 - * 발전량과 계통한계가격(SMP)을 월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월별 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연간 발전량 또는 해당 기간의 월별 평균 수치를 적용한다.
 - ** 실제 발전량은 발전소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의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발전량으로서 계통한계가격(SMP) 등 산정에 적용된 발전량을 적용하고 계통한계가격은 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kpx.or.kr)의 가격을 적용한다.
 - ② 공급인증서 매매 관련 손실보전비용
(최저발전량 - 실제발전량) × 공급인증서 가중치 × 공급인증서 매매가격
 - * 공급인증서 매매 가격은 실제 공급인증서를 매매한 월의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마을공동체”의 귀책사유로 매매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전하지 않으며 “ReSCO”의 귀책사유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ReSCO”는 최저발전량으로 인한 손실보전비용을 포함한 전체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③ 적용의 예외
(최저발전량 - 실제발전량) < 0 인 경우 손실보전비용은 0원으로 적용